

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제39조제2항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,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,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.
 - 가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나.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4.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5.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,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II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	법 제19조	지정취소			

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·발급한 경우	제1항제2호				
3.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3호	경고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4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4호				
가.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를 작성·발급기간 내에 작성·발급하지 않은 경우		경고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나. 삭제 <2022. 12. 30.>					
다.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	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	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5.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제5호	지정취소			